

## 대전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21가단1143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1. 이명용  
2. 이해경

원고들 주소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750, 2층(비래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소모에너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1 (대치동, 소모빌딩)

공동대표이사 신준수, 신승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동균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3. 5.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그중 각 38,503,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각 11,497,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2022. 6.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2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 이 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50(비래동)에서 제일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부부인데 원고들은 2017. 11. 29. 피고<sup>1)</sup>로부터 피고가 판매하는 고급형(신유로셀프형) 주유기 3대를 구입한 사실, 2018. 4. 17. 위 3대를 철거하고 그 대신에 고가형(표준셀프형) 주유기 3대를 설치받은(전량 무상교체) 사실, 2018. 10. 8.과 2018. 11. 15.에는 저가형 주유기 각 1대를 추가 설치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위 주유기들은 다양한 하자를 보였는데 그 하자의 내용은 가격표시 오류, 주유전/주유중/주유후 셀프주유 프로그램 불

1) 피고의 상호가 당초 '주식회사 소모에너지엔테크놀러지'였다가 2021. 4. 13. '주식회사 소모에너지'로 변경登記되었다.

시 정지, 주유전/주유중/주유후 셀프주유 프로그램 자동 재부팅, 주유 모터 미작동/오작동, 신용카드 리더기 고장 등 신용카드 결제 실패, 지폐 투입기 고장 등 현금 결제 실패, POS에 오번호 입력, 유증기회수장치 작동 시 주유 불가, 인터폰 고장 등의 여러 가지인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처럼 주유기가 여러 하자를 보이고 정상 동작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 부부가 주유소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 매출 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주유기 하자로 인한 경제적 소극적 손해라고 인정되는 그 매출이익 감소 액수는 1억 원 또는 그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액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별 각 50,000,000원 및 그중 각 38,503,000원 ( = 77,006,000÷2 )에 대하여는 2021. 5. 7.(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머지 각 11,497,000원 ( = 50,000,000 - 38,503,000 )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2022. 6. 8.(청구금액을 확장한 2022. 6.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오현석



열람용

# 정본입니다.

2023. 5. 31.

대전지방법원

법원주사 문승규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